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7
----------	-----

2024.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상자서전 사업의 종류 규정(안 제5조)
- 수행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 홍보와 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규정(안 제7조)
- 영상자서전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도민의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
-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은 2023년 노인복지과와 RISE추진과에서 추진했고, 2024년도부터는 노인복지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영상자서전 촬영 및 업로드 실적('23): 촬영 6,186건, 업로드 3,832건
- 본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자사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계획, 영상자사전 제작관리,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

총칙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실체 규정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업의 평가)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실체 규정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영상자사전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칙 규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제7조(홍보·교육)		부 칙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충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임.
 - 안 제2조제1호에서 “영상자사전”의 뜻을 ‘도민 또는 도민의 가족이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음.
 - 먼저, 본 조례안에서는 “자사전”에 대한 정의에 있어 작성자의 연령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포괄적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자사전”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없는 바, 조례에서 별도의 정의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음.

- 다만 “자서전”은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자서전”의 의미를 통상적으로 인생 황혼기에 삶을 회고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을 “자서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에서의 정의는 통념상 의미의 범주를 넘어선 정의인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영상 자서전”의 인정 범위를 본인이 반드시 포함된 영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符合)할 것임. 그럼에도 제2조 제1호에서는 “또는”이란 연결어를 사용하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출연한 영상물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조제1호 중 “충청북도민”은 도에 주소를 둔 사람, 즉 「지방자치법」 제16조³⁾에 따른 “주민”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생활인⁴⁾”이란 단어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채 생활하는 사람까지 영상 자서전 대상에 포함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충청북도민”이나 “생활인”은 법령에 명확히 정의된 용어도 아니고 의도했던

3)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4) ‘생활인’이 뜻하는 바와 유사한 법령용어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가 있음. 단, 이 법에 따른 “생활인구”의 경우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뜻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화된 것도 아니어서 이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조례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2호에서와 같이 조례에 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경우, 법제명과 해당 조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 바 수정이 필요함.
- 따라서 안 제2조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정안 예시〉

원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상자서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도민(생활인도 포함한다)의 가족이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p> <p>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p>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상자서전 촬영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체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조항에 사용된 용어인 “시책”은 법령 및 행정학에서 “정책”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책”은 제도, 사업계획, 정부 방침 등의 형태를 대변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임.
- 본 조항에서 “시책”은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의 의미가 강함. 따라서 포괄적 의미의 “시책”보다는 조례의 실체규정 체계상 ”계획“으로 명시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도나 조문의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내용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예시>

원안	수정안
<p>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u>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상자서전 사업 추진계획</u> 2. <u>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u> 3. <u>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u> 	<p>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u>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u> 2. <u>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u> 3. <u>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u> 4. <u>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u>

○ 안 제5조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영상자서전의 제작·관리, 보존·활용,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등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사업 수행 기관·법인·단체 및 참여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6조제2항과 제7조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사업(교육 포함)의 추진, 사업 참여 인력과 대상자에 대한 홍보 물품 및 실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홍보 차원의 경품 등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나목⁵⁾에 따라 경품지원 이벤트 사업 등 적극적 홍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아울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안 제11조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안 제12조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통해 도민 기록문화 보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단 영상자서전의 성격 상 별도 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도민 참여를 장려해 더 많은 도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인생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사업은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 사업을 통해 수집되고 기록되는 다양한 영상 자료는 충청북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교육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영상자서전의 사업대상을 초기의 어르신에서 장애인 등 소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며 양적확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영상자서전의 질적 제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본 조례안은 일부 설명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후 충청북도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영상자서전”에 대한 정의 및 띄어쓰기를 수정함 (안 제2조)
- “충청북도민”의 약어표기를 명시함 (안 제3조)
- “시책”을 “계획”으로 수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한 홍보 물품 및 실비 지원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 포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12조)
-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13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57
----------	--------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23일

발 의 자: 정책복지위원장

가. 수정이유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영상자서전”에 대한 정의 및 띄어쓰기를 수정함 (안 제2조)
- “충청북도민”의 약어표기를 명시함 (안 제3조)
- “시책”을 “계획”으로 수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한 홍보 물품 및 실비 지원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 포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12조)
-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13조)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를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안 제3조 중 “도민이”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시책의 수립·시행)”을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을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업 추진계획”을 “사업의 방향 및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상자서전”이란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도민(생활인도 포함한다)의 가족이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u></p> <p>2. “영상물”이란 「<u>영상진흥기본법</u>」 제2조제1호에 <u>따른 영상물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상자서전”이란 <u>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u> <u>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u> <u>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u></p> <p>2. “영상물”이란 「<u>영상진흥기본법</u>」 제2조제1호에 <u>따른 영상물을 말한다.</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도민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영상자서전 <u>사업 추진계획</u></p> <p>2. <u>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u></p> <p><u><신 설></u> <u><신 설></u> <u>3. (생략)</u></p>	<p>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 <u>사업의 방향 및 목표</u></p> <p>2. <u>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u></p> <p>3. <u>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u></p> <p>4. <u>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u></p> <p>5. (원안 제3호와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생 략)</p> <p>② <u>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④ (생 략)</p>	<p>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원안과 같음)</p> <p><삭 제></p> <p>②·③ (원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12조(포상) <u>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통하여 도민 기록문화 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13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
2.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자서전 제작·관리 및 보존·활용
2.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영상자서전 촬영 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수행기관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영상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
-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실비를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홍보비 : 홍보물품구입(160,000천원), 홍보부스운영(30,000천원), 홍보영상제작(10,000천원)
 - 도거점기관 운영 : 인건비 2명(67,600천원), 운영비 등(58,400천원)
 - * 인원 2명(팀장 1명, 팀원 1명), 홈페이지 데이터 관리(IDC입주), 운영 및 유지보수(월 55만원)
 - 찾아가는 영상자서전 : 인건비 3명(135,183천원), 운영비 등(64,817천원)
 - * 인원 3명(디렉터 3명)
 - 시니어 유튜버 양성 및 운영 : 100,000천원(도비^{100%})
 - 인건비 1명(44,661천원), 교육비 및 운영비(55,339천원)
 - * 인원 1명(디렉터 1명), 시니어유튜버 20명
 - 250,000원 × 20명 × 5개월 = 25,000천원 (활동비, 전액도비)
 - 노인일자리 촬영단 : 소요예산(국비 노인일자리사업) 423,200천원
 - * 인 건 비 : 50명 × 634천원 × 10개월 = 317,000천원
 - * 부대경비 : 50명 × 2,124천원 = 106,200천원
 - * 참여자 수 : '24년 : 50명, '25년 : 80명, '26년 ~ '28년 : 100명 추산
 - 시군 사업단 운영 : 660,000천원(264,000도비^{40%}, 396,000시군비^{60%})
 - * 11개 시군 × 60,000천원 × 1식 = 660,000천원

○ 추계 결과

- ('24년) 1,709,200천원, ('25년) 2,078,920천원 ('26년) 2,380,380천원, ('27년) 2,589,500천원 ('28년) 2,775,000천원 소요
- 매년 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률 등 반영
- * 향후, 영상자서전 사업유형 발굴·추진상황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증액) 가능

○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노인일자리) 및 도비, 시군비

- 노인일자리촬영단 : 국고보조(노인일자리사업)
- 시군 사업단 운영 : 도비 및 시군비
- 그 외 사업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1,898,360	211,600	338,560	423,200	450,000	475,000
국비 (노인일자리)	1,898,360	211,600	338,560	423,200	450,000	475,000
세 출	11,533,000	1,709,200	2,078,920	2,380,380	2,589,500	2,775,000
홍 보 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도 거점기관 운영	706,280	126,000	121,800	133,980	159,500	165,000
찾아가는 영상자서전	1,130,000	200,000	210,000	220,000	240,000	260,000
시니어 유튜버 양성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노인일자리 촬영단	3,796,720	423,200	677,120	846,400	900,000	950,000
시군 사업단 운영	4,400,000	660,000	770,000	880,000	990,000	1,100,000
재원 조달	11,533,000	1,709,200	2,078,920	2,380,380	2,589,500	2,775,000
국 비	1,898,360	211,600	338,560	423,200	450,000	475,000
도 비	5,286,116	911,160	973,656	1,048,300	1,140,500	1,212,500
시 군 비	4,348,524	586,440	766,704	908,880	999,000	1,087,500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홍지연